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8. 18 선고 2021가단1295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경남 함안군 C 대 208㎡를 인도하고,

나. 별지 1 감정도 표시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“가”부분 65㎡와 22, 23, 24, 25, 26, 27,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“다”부분 8㎡의 건물을 철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한철

별지